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3호 2015. 7. 30.(목)

고 시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 ----- 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5 - 105호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 고시 합니다.

2015. 07. 30 .

사 천 시 장

□ 대진 일반산업단지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첨단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업 및 위그선(Wing -In-Ground Effect Ship) 상용화기업을 유치하여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설비의 생산과 위그선 제조 및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사천시의 위상을 국내 최고의 신소재산업·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

고 시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2-2번지 일원
- 나. 면 적 : 251,485m²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가. 개발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 대진산업단지(주)의 3개사 대표 정 기 찬
-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5 (2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답	구거	도로	임야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필지수	30	6	1	3	16	2	1	1
면 적(m ²)	251,485	11,611	181	16,218	219,814	1,412	1,832	417
구성비(%)	100.0	4.6	0.1	6.4	87.4	0.6	0.7	0.2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

고 시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계	산림청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사천시	
필지수	30	9	7	1	1	3	18
면적(㎡)	251,485	183,050	181,684	181	1,185	16,218	52,217
구성비(%)	100.0	72.8	72.2	0.1	0.5	6.5	20.7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251,485	100.0	
산업시설공간	149,610	59.5	
BL1	27,625	11.0	
BL2	30,345	12.1	
BL3	55,940	22.2	
BL4	35,700	14.2	
지원시설공간	12,760	5.1	
지원시설1	6,040	2.4	
지원시설2	6,720	2.7	
공공시설공간	89,115	35.4	
도로(중로1-5호선)	28,645	11.4	도로:12.7%
도로(중로2-18호선)	3,250	1.3	
주차장⑩	1,960	0.8	주차장:2.0%
주차장⑪	3,085	1.2	
배수지⑤	1,120	0.4	
저류지③	2,805	1.1	
오수처리시설⑥	255	0.1	가압장
소공원⑱	9,415	3.7	녹지:19.1%
소공원⑳	780	0.3	
완충녹지㉓	9,395	3.8	
완충녹지㉔	28,405	11.3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5)

고 시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2)	6,521 (1,147)	66,976 (23,000)	(1)	948 (948)	19,750 (19,750)	3 (1)	5,573 (199)	46,226 (3,250)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2)	1,147 (1,147)	23,000 (23,000)	1 (1)	948 (948)	19,750 (19,750)	1 (1)	199 (199)	3,250 (3,250)	-	-	-
소로	2	5,374	42,976	-	-	-	2	5,374	42,976	-	-	-

주) () 내 사항은 산업단지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6,300	중로3-1	중로3-3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2011.7.28.)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1,670	중로3-1	중로1-가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구역 외)
신설	소로	2	90	8	국지 도로	3,704	중로1-가	중로3-3	일반 도로	-	-	소로2-34 노선분리 (구역 외)
신설	중로	1	5	20	국지 도로	948	소로2-34	소로2-가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가	대진리 산70-4	일반 도로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6)

고 시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	증) 1,960	1,960	-	
신설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	증) 3,085	3,085	-	

3)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대진 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	증) 9,415	9,415	-	
신설	20	대진 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	증)780	780	-	

4)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2 일원	-	증) 9,395	9,395	-	
신설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	증) 28,405	28,405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7)

고 시

5) 상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수도공급 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	증) 1,120	1,120	-	

◎ 용수량

구분	용수수량(m ³ /일)	비고
계	114.1	
생활용수	114.1	
공업용수	-	

6) 하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	증) 255	255	-	펌프장

◎ 오·폐수량

구분	오·폐수량(m ³ /일)	비고
계	67.46	
생활오수	67.46	
산업폐수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8)

고 시

7) 우수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3	우수지	저류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	증) 2,805	2,805	-	

8) 에너지공급계획

◎ 전 력

전력소요예상량(MWh/m ² ·년)	비 고
37,604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된 결과반영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추정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40,084		
용 지 비	소계	7,384	
	토지매입비	6,934	실거래가 적용: 평당 9만원
	지장물보상비	450	추정금액(축사, 주택2채, 묘지10기 등)
조 성 비	소계	25,400	
	공사비	16,730	부지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제경비	8,670	
자본비용	소계	3,600	
	금융이자	3,600	24개월
기타비용	3,700	각종부담금, 운영 등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9)

고 시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0,084	8,330	12,554	9,600	9,600
용지비	7,384	4,430	2,954	-	-
조성비	25,400	2,900	8,700	8,700	8,700
각종부담금	3,600	1,000	900	900	900
간접비	3,700	1,110	1,110	1,48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0)

고 시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계	-	149,610	100.0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0,345	20.3
	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5,940	37.4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625	18.5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700	23.8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가. 토 지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총 계	251,485	100.0	-
산업시설공간	149,610	59.5	사업시행자에 귀속
지원시설공간	12,760	5.1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5,045	2.0	
주차장	5,045	2.0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84,070	33.4	
도로	31,895	12.7	사천시에 귀속
배수지	1,120	0.4	사천시에 귀속
저류지	2,805	1.1	사천시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255	0.1	사천시에 귀속
공원	10,195	4.0	사천시에 귀속
완충녹지	37,800	15.1	사천시에 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1)

고 시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도	로	중	로	1	-	5	B=20.0m	948	m	사	천	시	에	귀	속
		중	로	2	-	18	B=15.0	199	m	"					
우	수	L	형	측	구	B=500	2,833	m	사	천	시	에	귀	속	
		우	수	관	D300-D1200	2,391.5	m	"							
		우	수	받	이	400x500x750	150	개	소	"					
		집	수	정	700x700x1000	9	개	소	"						
		U	형	수	로	400C	121	m	"						
		우	수	맨	홀	1호,	6	개	소	"					
						2호	17	개	소	"					
		저	류	지			1.0	개	소	"					
		비	점	오	염	저	감	시	설						
오	수	오	수	관	D250-D300	675	m	사	천	시	에	귀	속		
		오	수	관	(압	송	관)	D150	696	m					
		오	수	받	이	410*510*940	5	개	소	"					
		오	수	맨	홀	1호	17	개	소	"					
상	수	상	수	도	관	D30 - D75	2,007	m	사	천	시	에	귀	속	
		체	수	변	D80	8	기	"							
		지	상	식	소	화	전	D100	1	개	소	"			
		배	수	지			1	식	"						
구	조	립	식	PC	압	거	H=0.6~4.0m	798	M	사	천	시	에	귀	속
							1.5x1.5	66	m	"					
							2.0x1.5	72	m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2)

고 시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포 장	아스콘포장	T=50cm	18,024	m ²	사천시에 귀속
	보도블럭	T=6cm	4,215	m ²	"
	잔디블록	996x996x150	3,602	m ²	"
	도로경계석	150x150x1000	3,648.5	m	"
가 로 수	이팝나무	H3.5xR12	241	주	사천시에 귀속
공 원	소공원	-	2	개소	사천시에 귀속
교통안전시설	방법 CCTV		2	개소	사천시에 귀속
	교통표지판	주의, 규제	27	EA	"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공	507	m ²	"
	차선도색	실선,파선	812	m ²	"
	도로표지병		433	EA	"
	도로반사경	D1000	5	EA	"
전 기	가로등	H=8m	54.0	본	사천시에 귀속
	교통신호기	점멸등	1.0	개소	"
	횡단보도유도등	횡단보도	5.0	개소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3)

고 시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2,124,147.5 (53,688,835.0)		452,124,147.5 (53,688,835.0)	100.0 11.9	()는 해면부	
도 시 지 역	계	91,010,196.5 (2,094,121.0)	증) 251,485.0	91,261,681.5 (2,094,121.0)	20.2 0.5	()는 해면부	
	주거지역	소 계		11,070,130.5	2.6		
		제1종전용주거지역	328,111.0		328,111.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376,886.0		6,376,886.0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4,383,021.0		4,383,021.0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9,451.5		179,451.5	0.0	
		준주거지역	441,661		441,661	0.1	
	상업지역	소 계	1,276,471.0		1,276,471.0	0.3	
		일반상업지역	1,157,961.0		1,157,961.0	0.3	
		근린상업지역	118,510.0		118,510.0	0.0	
	공업지역	소 계	9,484,551.0 (1,020,829.0)	증) 251,485.0	9,736,036.0 (1,020,829.0)	2.1 0.2	()는 해면부
		일반공업지역	8,512,355.0 (1,020,829.0)	증) 251,485.0	8,763,840.0 (1,020,829.0)	1.9 0.2	()는 해면부
		준공업지역	972,196.0		972,196.0	0.2	
	녹지지역	소 계	67,466,752		67,466,752	15.0	
		보전녹지지역	4,005,770.0		4,005,770.0	0.9	
		생산녹지지역	7,070,748		7,070,748	1.6	
	자연녹지지역	56,390,234.0		56,390,234.0	12.5		
	미 지정 (해면부)	1,073,292.0		1,073,292.0	0.2		
비 도 시 지 역	계	361,113,951.0 (51,594,714.0)	감) 251,485.0	360,862,466.0 (51,594,714.0)	79.8 11.4	()는 해면부	
	관리지역	소 계	125,293,237.0	감) 68,362.0	125,224,875.0	27.7	
		보전관리지역	47,100,731.0	감) 54,641.0	47,046,090.0	10.4	
		생산관리지역	35,349,462.0	감) 13,721.0	35,335,741.0	7.8	
		계획관리지역	42,710,494.0		42,710,494.0	9.4	
		관리지역미분류	132,550.0		132,550.0	0.1	
	농림지역	170,593,738.0	감) 183,123.0	170,410,615.0	37.7		
	자연환경보전지역	65,226,976.0		65,226,976.0	14.4		
	(해면부)	(51,594,714.0)		(51,594,714.0)	11.4		
	미 지정	-		-	-		

※ 기정 면적은 사천시 고시 제2015-68호(2015.6.4)기준 고시면적임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4)

고 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1,485	-	251,485	100.0	
보전관리지역	54,641	감) 54,641	-	-	
생산관리지역	13,721	감) 13,721	-	-	
농림지역	183,123	감) 183,123	-	-	
일반공업지역	-	증) 251,485	251,48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일 반 공업지역	54,641	350% 이하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곤양면 대진리 1-4번지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일 반 공업지역	13,721	350% 이하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곤양면 대진리 산70-4번지 일원	농림지역	일 반 공업지역	183,123	350% 이하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	증)251,485	251,485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5)

고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위치: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면적: 251,485㎡ 	대진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① 도로 총괄표

(단위 : 개, m, m²)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2)	6,521 (1,147)	66,976 (23,000)	(1)	948 (948)	19,750 (19,750)	3 (1)	5,573 (199)	46,226 (3,250)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2)	1,147 (1,147)	23,000 (23,000)	1 (1)	948 (948)	19,750 (19,750)	1 (1)	199 (199)	3,250 (3,250)	-	-	-
소로	2	5,374	42,976	-	-	-	2	5,374	42,976	-	-	-

주) () 내 사항은 산업단지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6)

고 시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 로	2	34	8	국지 도로	6,300	중로3-1	중로3-3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2011.7.28.)	
변경	소 로	2	34	8	국지 도로	1,670	중로3-1	중로1-가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구역 외)
신설	소 로	2	90	8	국지 도로	3,704	중로1-가	중로3-3	일반 도로	-	-	소로2-34 노선분리 (구역 외)
신설	중 로	1	5	20	국지 도로	948	소로2-34	소로2-가	일반 도로	-	-	
신설	중 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가	대진리 산70-4	일반 도로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7)

고 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4	소로2-34	• 노선축소 : L=6,300m→1,670m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축소(구역 외)
-	소로2-90	• 노선신설 : L=3,704m, B=8m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소로2-34호선의 노선이 분리되어 신설(구역 외)
-	중로1-5	• 노선신설 : L=948m, B=20m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신설
-	중로2-18	• 노선신설 : L=199m, B=15m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신설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	증) 1,960	1,960	-	
신설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	증) 3,085	3,085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 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 면 적 : 1,960m ²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단지 내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1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 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 면 적 : 3,085m ²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단지 내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8)

고 시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대진 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	증) 9,415	9,415	-	
신설	20	대진 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	증) 780	780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9	대진 공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신설 • 위 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 면 적 : 9,415m² 	지역 생활권 거주자 및 종사자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20	대진 공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신설 • 위 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 면 적 : 780m² 	지역 생활권 거주자 및 종사자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2 일원	-	증) 9,395	9,395	-	
신설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	증) 8,405	28,405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19)

고 시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2 일원 • 면적: 9,395㎡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산업환경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24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 면적: 28,405㎡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산업환경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마)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수도공급 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	증) 1,120	1,120	-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수도공급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 면적 : 1,120㎡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0)

고 시

바)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유수지	저류 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	증) 2,805	2,805	-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 면적 : 2,805m²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	증) 255	255	-	펌프장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수질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펌프장) 신설 •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 면적 : 255m²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1)

고 시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계		251,485	-	-	251,485	
-	I	195,430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149,610	산업시설용지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번지 일원	1,960	주차장10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번지 일원	9,415	소공원19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28,405	완충녹지24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6,040	지원시설용지1
-	II	24,160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번지 일원	3,085	주차장11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255	오수처리시설6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6,720	지원시설용지2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번지 일원	2,805	저류지3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번지 일원	1,120	배수지5
-			6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2번지 일원	9,395	완충녹지23
-			7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780	소공원20
-	-	31,895	-	-	31,895	도로(2개 노선)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2)

고 시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남측부 5m 녹지대로부터)
I-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3)

고 시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소공원1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증) 9,415.0	9,415.0	
신설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0-1	-	증) 317.8	317.8	
신설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70-1	-	증) 914.0	914.0	
신설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0-1	-	증) 8,183.2	8,183.2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9,415.0	-	-	
신설	도로	317.8	-	-	
신설	휴양시설	914.0	-	-	
신설	녹지	8,183.2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4)

고 시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위치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9,415	-	-	-	-	
도로	소 계		317.8	-	-	-	-	
	1-1	보행로1	87.6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1-2	보행로2	80.5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3	보행로3	23.4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4	보행로4	41.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5	보행로5	85.3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휴양 시설	소 계		914.0	-	-	-	-	
	2-1	휴게시설1	600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2-2	휴게시설2	10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2-3	휴게시설3	214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녹지	3	녹지	8,183.2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나) 소공원2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780.0	780.0	
신설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	-	증) 52.5	52.5	
신설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1-8	-	증) 58.5	58.5	
신설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1-2	-	증) 669.0	669.0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5)

고 시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780.0	-	-	
신설	도로	52.5	-	-	
신설	휴양시설	58.5	-	-	
신설	녹지	669.0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위치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780.0	-	-	-	-	
도로	소 계		52.5	-	-	-	-	
	1-1	보행로1	52.5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휴양 시설	소 계		58.5	-	-	-	-	
	2-1	휴게시설1	58.5	곤양면 대진리 1-8	-	-	-	
녹지	3	녹지	669.0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6)

고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 장 총 칙

제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4 장 건축물의 용도

제5 장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8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 장 총 칙

제2 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7)

고 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전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사천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8)

고 시

- ④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효력을 지닌다.
- ⑤ 지침이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 에 의해 모순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지침의 내용을 적용한다.
- ⑥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관련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법령에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적용한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본 지침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 ② 『가구 및 획지』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계획목적상 분할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③ 『허용용도』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④ 『권장용도』 라 함은 대상지역의 기능,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권장된 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불허용도』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⑥ 『최고높이』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 ⑦ 『건축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 ⑧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지를 말한다.
- ⑨ 『건축물의 전면』 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된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
- ⑩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일단의 대지안에 일반인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통로를 말한다.
- ⑪ 『간선도로』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거나 연결하여 통과하는 도로로서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⑫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29)

고 시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5 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역의 세분 및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에 대한 결정(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2. 1호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본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건축계획 심의/허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전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현황 및 배치도
8.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심의 도면 제출시 주변 건축물이 함께 포함된 현황사진에 계획입면을

합성한 그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9.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관련된 요구자료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0)

고 시

제 7 조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기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단의 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사항을 반영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제 8 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중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규제사항이 서로 상이한 필지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도로폭이 더 큰 필지, 면적이 큰 필지, 강화된 규제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규 제 사 항

제 9 조 (가구 및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모든 가구 및 획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가구 및 획지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가구 및 획지로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분할/합병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지의 분할
 2. 기부채납 등 토지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1)

고 시

제 4 장 건축물의 용도

규 제 사 항

제 10 조 (허용용도)

① 허용용도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② 허용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도면표시

허용용도

제 11 조 (불허용도)

① 불허용도 규제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② 불허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③ 도면표시

불허용도

제 5 장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규 제 사 항

제 12 조 (건폐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2)

고 시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건폐율

70

제 13 조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용적률

300

제 14 조 (건축물의 최고높이)

① 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도면표시

최고높이

최고높이

제 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권 장 사 항

제 15 조 (건물의 방향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전면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3)

고 시

제 16 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은 “건축법” 및 “사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권 장 사 항

제 17 조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대지안의 조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사천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제 19 조 (조경 및 식재에 관한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는 해당 업체가 관리토록 한다
- ② 완충녹지, 녹지 및 공원에는 계절별 수종으로 식재토록 한다

제 8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권 장 사 항

제 19 조 (내부동선)

-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산업단지 내부도로(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생산공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내부도로는 가급적 구조물 및 도색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4)

고 시

규 제 사 항

제 20 조 (부설주차장)

-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 통보에 따라 설치하되,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의된 부설주차장의 용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권 장 사 항

제 21 조 (건축물의 의장)

-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변의 식생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은 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급적 모든 벽에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관적으로 유리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2 조 (외벽 및 담장의 처리)

- ①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담장설치를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담장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담장을 권장하되,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간선도로변에 10m 이상의 접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을 금지하되, 벽면에 조경, 벽화, 수퍼그래픽 등 장식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5)

고 시

제 23 조 (건축물의 1층의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①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②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③ 야간조명등의 사용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결정된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적용의 범위)

- ①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함한 도로시설물, 포장, 도시안내체계, 가로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 ②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 및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단, 시행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보다 개선된 공공부문계획 및 설계내용이 수립될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본 지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6)

고 시

제 2 장 시설별 시행지침

도 로 시 설

제 5 조 (설계기준)

- ① 주행 차로폭 및 보도측 차로폭은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② 승/하차 시설의 형태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승강장의 구조는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제 6 조 (보행입체교차시설)

- ① 보행입체교차시설은 경사로, 지하보도, 육교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도로여건상 필요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이 높은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행입체교차시설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개공지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며 특히, 지하보도의 출입구는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변으로는 수목, 지피식물, 화초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입체교차시설의 폭은 보행량에 따라 결정하며 자전거와 장애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사로와 계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한다.
- ⑤ 지하보도의 출입구나 육교의 계단 전면부에는 보행동선의 지장을 주는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되, 단 육교의 계단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전화박스, 우체통,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시설의 입체시설화는 가급적 지양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한다.

제 7 조 (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로구간에 설치하되, 과속방지시설로 인한 2차사고의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m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7)

고 시

③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출입구, 급경사 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20m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제 8 조 (자전거도로의 적용범위)

일반도로 중 자전거 이용도로 및 이에 부수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계획에 따른다.

제 9 조 (입체보행통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및 안내판, 야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제 10 조 (보도포장재료)

- ①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 대량 구입이 가능한 재료
-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④ 가로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 ⑤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

제 11 조 (보도포장 설계 및 시공)

- ①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③ 보도 이외의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
-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8)

고 시

안내 표지시설

제 12 조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개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국토해양부)” 등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② 차량 및 보행 결절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소, 위치,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제 13 조 (설치방식 및 위치)

- ① 안내 표지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한다.
- ② 식별성과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며, 유사 형태의 안내표지시설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로 신축성 있게 규격화 하여야 한다.
- ③ 연속적인 안내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제 14 조 (보행안전 안내시설)

- ①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부에 안내 표지판 또는 1m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 한다.
- ②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③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떨어지도록 설계 배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39)

고 시

가 로 식 재

제 15 조 (수종선정)

- ① 가로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 ③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④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

제 16 조 (식재방법)

- ① 지구 내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등에 중점 식재하여 경관 향상을 유도한다.
-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 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 ⑤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을 조성한다.
- ⑥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 배치를 유도하며,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도로시설물

제 17 조 (도로시설물)

- ① 방호울타리
 1.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0)

고 시

② 블라드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부에 설치, 1~2m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2.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블라드 설치를 권장한다.
3.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부에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③ 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

구 분	도로변	버스정류장	보행결절점	쌈지공원 및 광장
휴지통	○	●	●	●
벤치	○	●	●	●
공중전화	○	○	○	○
음수대		○	○	○
파고라, 쉼터		○		○
가로 판매대		○	○	
자전거 보관대				○
시계탑			○	○
버스정차대		●		
문주				○

※ 필수시설 : ● 권장시설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1)

고 시

조 명

제 18 조 (설치기준)

- ① 가로의 조명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에 따라 적합한 조도, 배열방식, 높이 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② 조명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 및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KAS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 19 조 (야간 조명 강화)

-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②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가로변에는 보행등겸 벤치·블라드 설치를 권장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한다.
-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권장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하부조명 강화

조 명	해당용도	높 이	간 격	광 원	조명방식
블라드형 보행등	보행자전용/우선도로	0.8~1.5 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축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측향/하향측 간접조명

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설계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는 본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 설계(현상설계 적극모색)등의 상세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2)

고 시

제 21 조 (지침의 조정)

① 본 지침 상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본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관련 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나 자문을 득한 경우
4.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3)

고 시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번호	좌 표		번호	좌 표	
	X	Y		X	Y
1	172,632.5186	108,372.2617	41	172,109.2256	108,945.6646
2	172,646.0604	108,331.8837	42	172,138.0770	108,928.3560
3	172,648.4562	108,272.9179	43	172,145.5807	108,921.1567
4	172,671.3132	108,245.2612	44	172,149.1000	108,916.4650
5	172,673.6135	108,193.7704	45	172,156.0670	108,919.0680
6	172,645.3230	108,191.6250	46	172,159.6530	108,922.8200
7	172,638.6130	108,172.2570	47	172,166.7380	108,923.8400
8	172,638.5360	108,163.1140	48	172,178.4990	108,925.5320
9	172,634.2180	108,160.5330	49	172,179.1340	108,916.7750
10	172,621.1660	108,158.0514	50	172,185.6820	108,903.7590
11	172,611.7491	108,198.3124	51	172,188.4110	108,899.1790
12	172,585.5860	108,228.1690	52	172,193.8700	108,890.0180
13	172,567.3760	108,238.5460	53	172,194.8610	108,890.5030
14	172,559.7840	108,258.3240	54	172,200.3190	108,893.1710
15	172,476.9466	108,335.7784	55	172,202.9040	108,894.4350
16	172,415.5696	108,261.2575	56	172,209.0980	108,895.4960
17	172,376.4920	108,268.2250	57	172,221.9770	108,892.2970
18	172,336.0367	108,292.0751	58	172,242.9240	108,878.8390
19	172,319.8450	108,306.1880	59	172,244.6410	108,891.9040
20	172,312.5200	108,304.8530	60	172,245.7891	108,898.9132
21	172,308.3500	108,321.8990	61	172,283.8843	108,892.4913
22	172,303.1642	108,319.5818	62	172,303.8798	108,888.4594
23	172,297.7881	108,335.7245	63	172,323.8935	108,884.4711
24	172,256.1253	108,394.8232	64	172,342.0159	108,875.9693
25	172,241.6778	108,403.1907	65	172,359.8567	108,866.7956
26	172,223.3325	108,428.3279	66	172,375.1369	108,855.2457
27	172,207.4997	108,452.5307	67	172,394.2567	108,839.9594
28	172,114.6528	108,579.8193	68	172,411.1057	108,822.1773
29	172,072.9134	108,658.1631	69	172,426.2199	108,803.1012
30	172,055.5560	108,709.9365	70	172,440.5385	108,783.8404
31	172,046.3136	108,774.8763	71	172,454.6889	108,764.8701
32	172,014.4011	108,885.9947	72	172,460.0340	108,756.3626
33	171,986.7474	108,917.3733	73	172,441.5867	108,736.5942
34	171,956.0155	108,948.5468	74	172,536.5046	108,575.9980
35	171,951.2451	108,949.8668	75	172,542.1498	108,553.0943
36	171,953.0213	108,958.3960	76	172,569.3798	108,505.9222
37	171,973.6725	108,966.0889	77	172,562.9756	108,475.5413
38	172,005.1905	108,966.0376	78	172,566.8883	108,467.8459
39	172,041.9427	108,944.9049	79	172,591.5695	108,452.3998
40	172,060.9114	108,948.9910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4)

고 시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항공산업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공 부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0필지				401,248	251,485	-		-	-	-	
1	대진리	1	임	598	598	강춘성	성내리 155	-	-	-	
2	대진리	1-1	답	1,663	1	강춘성	성내리 155	-	-	-	
3	대진리	1-2	답	1,322	742	강춘성	성내리 155	-	-	-	
4	대진리	1-3	구	221	181	국(농림수산부)		-	-	-	
5	대진리	1-4	답	826	826	강춘성	성내리 155	-	-	-	
6	대진리	1-5	답	1,365	810	강춘성	성내리 155	-	-	-	
7	대진리	1-6	잡	3,157	1,832	강춘성	성내리 155	-	-	-	
8	대진리	1-7	답	714	650	강춘성	성내리 155	-	-	-	
9	대진리	1-8	답	8,582	8,582	강춘성	성내리 155	-	-	-	
10	대진리	4-1	대	1,224	1,224	유영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85-4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6-1501	-	-	-	
11	대진리	4-2	창	714	417	유영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85-4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6-1501	-	-	-	
12	대진리	4-3	대	188	188	백민웅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6번길 4(부평동2가)	-	-	-	
13	대진리	산70-1	임	137,461	53,825	국(산림청)		-	-	-	
14	대진리	산70-2	임	593	593	국(산림청)		-	-	-	
15	대진리	산70-3	도	9,393	9,313	사천시		-	-	-	
16	대진리	산70-4	임	50,002	50,002	국(산림청)		-	-	-	
17	대진리	산70-5	임	1,147	1,147	국(산림청)		-	-	-	
18	대진리	산70-6	도	2,498	1,965	사천시		-	-	-	
19	대진리	산70-8	임	91,622	48,132	국(산림청)		-	-	-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5)

고 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공 부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0	대진리	산71-2	임	10,397	10,397	강춘성	성내리 155	-	-	-	
21	대진리	산71-3	도	4,940	4,940	사천시		-	-	-	
22	대진리	산71-4	임	20,266	20,266	강춘성	성내리 155	-	-	-	
23	대진리	산72-1	임	14,841	13,471	국(산림청)		-	-	-	
24	대진리	산72-2	임	1,185	1,185	국(기획재정부)		-	-	-	
25	대진리	산72-3	임	14,604	14,514	국(산림청)		-	-	-	
26	대진리	산73-0	임	2,083	2,083	조주홍	환덕리 82	-	-	-	
27	대진리	산74-0	임	1,041	1,041	남평문씨강성군 파상빈공소종중	서정리 370	-	-	-	
28	대진리	산74-2	임	11,058	1,855	남평문씨강성군 파상빈공소종중	서정리 370	-	-	-	
29	대진리	산75-5	임	600	600	조상철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6-27	-	-	-	1/7
						조진흙	창원시 봉곡동 26-13	-	-	-	1/7
						조윤흙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 시티아파트 144-404	-	-	-	1/7
						조용석	부산 금정구 청룡동 350 청룡동경동아파트 106-607	-	-	-	1/7
						조재욱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2-9	-	-	-	1/7
						조재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 206-503	-	-	-	1/7
						조삼태	부산 서구 남부민동 35-19	-	-	-	1/7
30	대진리	산75-10	임	6,943	105	조상철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6-27	-	-	-	1/7
						조진흙	창원시 봉곡동 26-13	-	-	-	1/7
						조윤흙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 시티아파트 144-404	-	-	-	1/7
						조용석	부산 금정구 청룡동 350 청룡동경동아파트 106-607	-	-	-	1/7
						조재욱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2-9	-	-	-	1/7
						조재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 206-503	-	-	-	1/7
						조삼태	부산 서구 남부민동 35-19	-	-	-	1/7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6)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녹지,공원,유수지,수도공급설비,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도 로 Γ 중로1-5호선 : L=948m, B=20m
 \perp 중로2-18호선 : L=199m, B=15m
 - 나. 주차장 : A=5,045m²(주차장① A=1,960m², 주차장② A=3,085m²)
 - 다. 녹 지 : A=37,800m²(완충녹지① A=9,395m², 완충녹지② A=28,405m²)
 - 라. 공 원 : A=10,195m²(소공원① A=9,415m², 소공원② A=780m²)
 - 마. 유수지 : A=2,805m²
 - 바. 수질오염방지시설 : A=255m²
 - 사. 수도공급설비 : A=1,12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
 -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5(2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18. 12. 31 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사천시 항공산업과)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7)

고 시

□ 군도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군도	6호선	후전 ~ 중항	곤양면 대진리 산70-1	28,645	곤양면 대진리 산70-1	곤양면 대진리 산70-6		0.94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대진일반산업단지내 도로개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1. 1 ~ 2018.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사천시 항공산업과

사 천 시 공 보

제413호(48)

고 시

□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일반 도로	노선번호 (노선명)	군도6호선 (후전~중항간)
공사의 종류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신청인 : 대진산업단지(주) 대표 정기찬 외 3개사]		
공사시행 구간	곤양면 대진리 산70-1번지 ~ 산70-6번지 까지 (0.948km)		
공사시행 기간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0일 까지		
공사시행 이유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기존 군도6호선(폭8m)의 도로가 이설 됨에 따라 폭원 20m로 연장 948m를 개설		